

성과연봉제도 시행규칙

[제정 2010. 12. 29]

[개정 2011. 9. 28]

[개정 2013. 11. 25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급여규정 제4조 제3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원의 성과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조직의 부서장 및 그 하부조직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.(개정 2013.11.25)

②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.)에 적용되는 관계법령, 정관, 급여규정, 급여 및 수당 지급규칙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직무급”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조직의 부서장 및 그 하부조직의 장 등의 직무가치 따른 수당을 말한다.(개정 2013.11.25)
2.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성과연봉제 시행에 따라 변경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전환된 기본연봉의 1개월분의 금액을 말한다.

제4조(기본연봉) 직원의 기본연봉은 전년도의 성과 및 임금인상률에 따라 <별표 1>에 따른 인상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.

제5조(성과연봉) 직원의 성과연봉은 매년 진흥원의 경영실적, 예산 등을 고려하여 <별표 2>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.

제6조(직무급) ① 직무급은 직제규정 등에 의하여 원장이 보한 직책보유자에게 지급한다.

② 직무급의 지급기준은 <별표 3>과 같다.

③ 직무급은 매월 급여규정 제6조에 규정한 지급일에 지급하되,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한다.

제7조(보칙) ①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변동에 따라 변경되는 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급여 및 수당지급규칙에 따라 조정한다.

부 칙(2010. 12. 2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9. 2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1. 25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기본연봉 인상률

(단위 : %)

평가등급	S	A	B	C	D
인상률(A)	$\alpha+1.0\%$	$\alpha+0.5\%$	$\alpha\%$	$\alpha-0.5\%$	$\alpha-1.0\%$

- ※ 기준인상률(α) : 당해 연도 기본연봉 인상률
- ※ 개인별 기본연봉 인상률 : 평가등급별 인상률(A) + 직급별 조정계수(β)
- ※ 직급별 조정계수(β) : 직급별 인원 분포, 직급별 임금수준, 직급 내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조정계수
- ※ 기준인상률(α)이 1%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평가등급에 대해 기준인상률(α)을 동일하게 적용

<별표 2>

성과연봉 지급률

(단위 : %)

평가등급	S	A	B	C	D
지급계수(B)	135.0%	117.5%	100.0%	82.5%	65.0%

- ※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 : 개인별 성과연봉 기준액 × {평가등급별 지급계수(B) ± 조정계수(δ)}
- ※ 개인별 성과연봉 기준액 : 개인별 경영평가성과급(160%, B등급 기준) + 개인별 성과연봉 총당금
- ※ 조정계수(δ) : ‘ Σ 개인별 성과연봉 기준액’과 ‘ Σ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’이 동일하도록 조정하는 계수

<별표 3> (개정 2011.9.28)

직무급 지급기준

(월지급액, 단위 : 천원)

구 분	본부장급	단장급	팀장급
직무급	1,800	1,500	1,100

※ TF팀장의 경우 성과연봉제 시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300천원/월을 직무급으로 지급